

태국 헌법재판소

국가개요

1. 국명 : 타이랜드 왕국(Kingdom of Thailand)
2. 수도 : 방콕(Bangkok, 820만명)
3. 인구·면적 : 6,540만명(2010.9.), 514,000km²(한반도의 2.3배)
4. 공용어 : 타이어, 영어(지도층)
5. 1인당 GDP : 4,992불(2010년)
6. 국경일 : 12.5.(Phumiphon국왕 탄생일, 1927년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내각책임제, 양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-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

2. 연혁

- 1997. 10. 11.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른바 '국민의 헌법'으로 개정 -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신설
- 1998. 4. 11. 최초로 독립된 헌법재판소 설치
- 1998. 6. 9.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
- 2007. 8. 20. 헌법 개정

3. 구성

-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 및 8인의 재판관(Judge)으로 구성, 상원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
 - 최고법원 판사 3인 : 최고법원판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
 - 최고행정법원 판사 2인 : 최고행정법원판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

- 법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분야 전문가 2인 및 국가행정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정치, 행정, 기타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2인 :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에서 2/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, 상원이 승인

※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 : 최고법원장, 최고행정법원장, 하원의장, 하원 야당 대표, 헌법기관장 대표 등 총 5인으로 구성

- 헌법재판소장은 9인의 재판관 중에서 호선
-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, 정년은 70세

4. 권한

가. 위헌법률심판

① 추상적 규범통제

○ 법률안

- 조직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법률안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
- 일반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장, 상·하원 의장, 수상이 법률안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. 의회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·하원 전체 재적의원 1/10이상의 찬성 필요

○ 법률

- 음부즈만은 법률의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
-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

② 구체적 규범통제

-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심판제청을 함.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합헌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위헌심판제청을 해야 함

※ 2007년 헌법 개정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도입

나. 탄핵심판

다.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부형태 보호를 위한 심판

- ① 정당해산심판
- ② 의원의 정당활동에 대한 심판

라. 헌법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

마. 헌법소원심판(200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)

-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개인은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. 다만, 헌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함

바. 기타 : 정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소송, 상·하원 등의 자격심사권 등

※ 2007년 헌법 개정으로 재산공개 위반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관련 심사권은 삭제. 개정 헌법은 반부패 관련 심사권을 최고법원 정치인 형사재판부에 부여

5. 심리 및 결정

- 심판청구는 문서로 해야 하며, 심리는 공개주의 원칙
- 심리와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5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, 결정은 헌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함

- 다만, 헌법재판소의 절차규정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하며, 긴급명령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2/3이상의 찬성을 요구
- 심리에 참여한 각 재판관은 결정전에 자신의 의견을 평의에서 구두로 표시하여야 함
- 결정서에는 사건의 개요,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결정의 이유, 침해된 헌법 조항과 관련 법률 규정 등이 포함됨
-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, 각료회의,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최종적 효력을 가짐
-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됨

6. 기타사항

-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으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이 전부이며, 변형결정은 존재하지 않음

7. 연락처

- 주 소 : Building A ,120 Moo 3 Chaengwattana Road, Laksi District, Bangkok 10210, Thailand
- 전화번호 : +66 0 2141 7777
- 팩스번호 : +66 0 2143 9522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constitutionalcourt.or.th>

※ 출처 : 태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, 2007년 개정 헌법 및 외국 헌법재판제도 조사 자료집 참조(2011. 8. 31. 작성)